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인삼류의 경우 절편 인삼류에 한하여 표시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등급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절삼 인삼류에 대하여도 별도의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진공포장 외에 질소 포장, 캔 포장 등 인삼류의 품질과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한 포장 방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정하는 한편, 자체검사업체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2. 31. ~ 2016. 2. 11., 2016. 2. 11. ~ 3.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1건(인삼류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 중 “절편”을 “절편 및 절삼”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질소 포장, 캔 포장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 방법으로 인삼류의 품질과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홍삼·태극삼 및 흑삼은 20년 이내, 백삼은 10년 이내
2. 진공포장한 홍삼·태극삼 및 흑삼은 10년 이내, 백삼은 3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포장한 홍삼·태극삼·흑삼 및 백삼은 2년 이내

제28조의2를 제28조의3으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황피(黃皮)”란 생리장해로 인하여 수삼에 나타나는 황토색 또

는 적갈색(황토색부터 적갈색의 범위 안에 있는 색깔을 포함한다)을 띠는 표피 또는 황피가 있는 수삼을 제조하였을 때 홍삼·태극삼·백삼에 나타나는 적갈색을 띠는 표피를 말한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연근기준

연근검사의 기준은 머리·몸통 및 표피의 형태, 다리부분의 발달 정도, 절단시 나이테 등을 육안 또는 발색시켜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 다만, 연근이 다른 인삼이 혼입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근분류를 요청하되, 신청인이 혼입된 채로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낮은 연근으로 판별한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2)가)(1)의 등급란 중 “1등(천)”을 “1등(천삼)”으로, “2등(지)”을 “2등(지삼)”으로, “3등(양)”을 “3등(양삼)”으로 하고, 같은 목 2)가)(1) ①체형의 다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리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 이와 같거나 작은 것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 이와 같거나 작은 것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	---	---	----------------

별표 3의2 제2호나목2)가)(1) ③조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조직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mm 이하인 것으로 길이 10mm 이하인 것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뇌두 밑 10mm 이하부분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내백의 직경이 몸통 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 직경의 1/2 이하인 것
-----	---	--	--

별표 3의2 제2호나목2)나)(1)의 구분란 중 “1등(송)”을 “1등(천삼)”으로, “2등(죽)”을 “2등(지삼)”으로, “3등(매)”을 “3등(양삼)”으로 하고, 같은 목 2)나)(1) ①외관 및 성상의 다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리	다리가 없거나, 있는 경우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기와 같거나 작은 것	다리가 없거나, 있는 경우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기와 같거나 작은 것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	--	--	----------------

별표 3의2 제2호나목2)다)(1)의 구분란 중 “1등(송)”을 “1등(천삼)”으로, “2등(죽)”을 “2등(지삼)”으로, “3등(매)”을 “3등(양삼)”으로 하고, 같은 목 2)다)(5)의 등급란 중 “1등(송)”을 “1등(천삼)”으로, “2등(죽)”을 “2등(지삼)”으로, “3등(매)”을 “3등(양삼)”으로 하며, 같은 목 2)라)(1)의 등급란 중 “1등(천)”을 “1등(천삼)”으로, “2등(지)”을 “2등(지삼)”으로, “3등(양)”을 “3등(양삼)”으로 하고, 같은 목 2)라)(1) ①체형의 다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리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기와 같거나 작은 것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기와 같거나 작은 것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	--	--	----------------

별표 3의2 제2호나목2)라)(1) ③조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조직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너두 밑 10mm 이하부분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	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2 이하인 것
-----	--	--	--

mm 이하인 것으로 길이 가 10mm 이하인 것	mm 이하의 것으로 몸통 길이의 1/4 이하인 것
-------------------------------	--------------------------------

별표 3의2 제2호나목3)가)(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7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홍삼본삼 · 흑삼본삼

구 분			600g	300g	150g	75g	37.5g	개체당 중량 (g)
크기별	지 별	편급별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특대편	5	9	9	5	2	-	-	60 이상
	10	14	14	7	-	-	-	36 이상
	15	19	19	10	-	-	-	27 이상
대편	20	28	28	14	7	-	-	18 이상
	30	38	38	19	10	5	-	13 이상
	40	48	48	24	12	6	3	11 이상
중편	50	58	58	29	15	8	-	9 이상
	60	68	68	34	17	9	-	8 이상
	70	78	78	39	20	10	-	7 이상
소편	소지		70 ~ 100	40 ~ 50	21 ~ 25	11 ~ 13	-	6 이상
	편급외		101 이상	51 이상	26 이상	14 이상	-	6 미만

※ 비고: 포장검사는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에 따른 지별 또는 편급별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300g 단위 포장의 지별 · 편급별 · 뿌리수 및 개체당 중량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포장단위가 37.5g 이하이거나 개체당 중량이 60g 이상인 특대편의 경우 날개 포장을 할 수 있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3)다)의 비고 중 “검사할 수 있다”를 “검사할 수 있으며, 포장단위가 75g 이하이거나 개체당 중량이 47.1g 이상인 특대편의 경우 날개 포장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목 4)가) 중 “편급 · 뿌리수”를 “뿌리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p>가. 법 제17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일반검사기준(수분은 제외한다) 및 개별검사기준(별표 3의2 제2호나목5)나)부터 같은 목 5)마)까지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p>	<p>경고. 다만,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및 개별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정지 1개월</p>	<p>검사 정지 6개월</p>	<p>지정 취소</p>
---	---	------------------	--------------

별표 4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나. 법 제17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개별검사기준(별표 3의2 제2호나목5)나)부터 같은 목 5)마)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p>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은 제조일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1.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및 흑삼은 2년이내, 진공포장한 홍삼·태극삼 및 흑삼은 10년이내

2.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백삼은 2년이내, 진공포장한 백삼은 3년이내

<신 설>

<신 설>

제28조의2 (생략)

-----.

1. 질소 포장, 캔 포장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 방법으로 인삼류의 품질과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홍삼·태극삼 및 흑삼은 20년이내, 백삼은 10년 이내

2. 진공포장한 홍삼·태극삼 및 흑삼은 10년이내, 백삼은 3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포장한 홍삼·태극삼·흑삼 및 백삼은 2년 이내

제28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의3 (현행 제28조의2와 같음)